

인천지방법원 2024. 5. 7 선고 2023가단11261 판결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4. 3. 12.

판 결 선 고 2024. 5. 7.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3.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위 피고에게, 2020. 8. 31. 1억 원을 이자 월 250만 원, 변제기 2020. 12. 31.로 정하여, 2020. 10. 13. 3,000만 원을 이자 월 50만 원, 변제기 2020. 12. 31.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억 3,000만 원(= 1억 원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 날인 202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11. 1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 C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C 및 그 모(母)인 피고 B에게, 2020. 8. 31. 1억 원, 2020. 10. 13.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갑 제1호증)에 채무자로서 날인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① 피고 B은 피고 C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고 자신 명의의 계좌 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1억 3,000만 원 대여에 관하여 민법 제125조 내지 제126조에 따라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② 피고들은 공모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③ 피고 B은 피고 C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사람으로서, 위 1억 3,000만 원 대여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④ 피고 B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위 1억 3,000만 원 중 1억 원을 송금받아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채권자로, D가 채무자로, 피고 C이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된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2020. 8. 31.자 차용증 및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한 2020. 10. 13.자 차용증이 각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D는 피고 B 명의로 설립된 사업체이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대여계약이 성립한 바 있다거나, 위 각 차용증에 채무자로 기재된 D가 피고 B을 지칭하는 것이라거나, 위 각 차용증의 각 채무자 란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참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일정

범위의 기본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 B이 피고 C에게 자신의 명의 및 계좌를 사용하도록 대여 내지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원고로부터의 금원 차용에 관한 대리권 수여가 있었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위 대리권 수여에 관한 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기망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및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설령 피고 B이 피고 C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바 있다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는 등 행위를 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거나, 피고 B이 피고 C의 기망 행위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바 있다거나,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피고 B이 피고 C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금원 지급의 원인이 된 대여계약이 이후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거나, 피고 B이 위 금원 지급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